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97호 2023. 8. 16.(수)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2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9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9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5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8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3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4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안) 86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41호(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6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6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06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선도 사업
6.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 대상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한 성 민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의 절차,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9조)
- 인사청문의 결과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 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회부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 질의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

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3. 미첨부 사유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한 성 민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2022. 4. 28. 시행)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제정, 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안 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6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그 절차와 결과보고(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안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 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함)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8)에 해당하는 업종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9)에 해당하는 업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체사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营业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안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정 수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소상공인생산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포상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

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교육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

원

-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매 촉진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

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8조(지원사업 등)
- 안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정 수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안 제3조, 제4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5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보호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제3조(대상자) ③ 갇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갇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갇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갇생보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갇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갇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갇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갇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사업)
- 제7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현 주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안 제4조)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및 대상(안 제6조 ~ 제7조)
-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은둔형 외톨이 자립지원 및 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
 2. 학술 조사·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제9조(자립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제6조(지원사업 등)

제9조(자립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한 성 민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안 제6조)
- 여성장애인 참여 확대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여성장애인 고용, 문화예술, 건강, 자립 생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0조, 11조, 12조, 13조)
-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 제14조)
-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등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16조, 1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

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임신부를 위한 접근권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용과 출산시설, 산후조리시설 지원

2. 임신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추진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제언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구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비영리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안 제8조)
-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안 제10조)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안 제11조)
- 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여성장애인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안 제4조 및 제5조)
- 학교환경교육 등 지원(안 제6조)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공무원 환경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 환경교육주간(안 제9조)
-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안 제10조)
- 환경교육 단체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

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
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현황조사 및 제공
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교 및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교육법)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주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 안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 안 제12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환경교육 등 지원’에 대하여 기 운영중인 환경교육 사업의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향후 예산 편성 필요시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환경교육 단체 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통합놀이터를 설치 및 관리하여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통합놀이터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통합놀이터 안전기준 및 조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통합놀이터 예산확보와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 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

체육시설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 제9조(업무의 분담)
- 제10조(예산확보와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윤 혜 영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4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예우 및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구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3.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회장
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4. 개인(단, 개인은 18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

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명예구민증
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제6
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명예구민증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필
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
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
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구민 초청 구정 설명회 개최
2.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3.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5.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6. 구청장 명의 연하장 및 구정 홍보자료 발송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별표]

명예구민증 (제6조제2항관련)

《앞 면》

제 호	명예구민증
○ ○ ○	사 진 35mm×45mm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인)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가로 8.4cm×세로 5.4 cm ※ 변형가능	○재 질 : P.V.C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앞면 (한글) 뒷면 (영어 또는 기타외국어) - 선택표기 ※ 변형가능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

사 진 (3.5cm×4.5cm)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국 적(출생지)		
	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	자 택	주 소	
		전 화	
	사무실	주 소	
		전 화	
주 요 경 력			
공 적 사 항		(별지작성 가능)	

붙임 : 공적증명자료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단체 ○○○ 인

또는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제9조제1항 관련)

[illegible]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 안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명예구민증은 개당 단가가 13,000원 이내 (조폐공사의 공무원증 발급단가 기준)로 예상되고, 안 제7조제1항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명예구민이 추가되는 경우로 그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이는 기존의 사무관리비나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음.
- 또한, 안 제7조제2항 명예구민의 각종 편의 지원 사항 또한 기획예산과에 기 편성된 ‘국내외교류협력증진’ 203-03, 301-09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 은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41호

「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종전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새롭게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진정서 등 접수 및 불수리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진정서 등 회부 및 이송 (안 제5조)
-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및 기간, 결과통지 (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관리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문서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등의 처리 상황을 기록·관리한다.

④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불수리사항) ① 사무국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진정인(여러 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불수리하는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이를 폐기한다.

③ 동일한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진정서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진정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처리 결과 통지) 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처리중인 진정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처리중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진정서 등 처리부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제 목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진정서등요지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진정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				
건명				
요지				

(별지 제4호서식)

진정서등검토의견

접수일자				접수번호	
진정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소관위원회회부일			전문위원		
건명					
진정요지					
검토의견					

(별 지 제5호서식)

진 정 서 처 리 결 과

건 명			접수번호	
			회부일자	
진 정 인	주 소			
	성 명			
소관 위원회				
진 정 요 지				
처 리 의 견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소관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0000위원회 위원장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8.1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19.03.14	송도바이오대로 시점에서 3460m 떨어진 오른 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도동 20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346번길 6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